아파트세무주치의 서비스 계약서

(甲) 신청인	상 호(단지명)	샬레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전산프로그램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	314-82-82964	아파트 코드번호	85696
	대표자 / 관리소장	강 영 제 (인)	전화번호	063-548-0010
	사업장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검산택지4길 30	팩스번호	
(乙) 세무 대리인	상 호	한서회계법인	사업자등록번호	120-88-11075
	대 표 자	김영린		
	사업장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4-1 나라키움삼성동A동빌딩 6층		
(丙) 서비스 업체	상 호	기웅정보통신㈜	사업자등록번호	214-81-59394
	대 표 자	최 병 인	전화번호	1899-5915
	사업장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IT캐슬 2동 613호		

"甲"과 "乙"과 "丙"은 아래의 계약 조건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신규계약 □ 재계약 ■]**

[계약 조항]

제1조【업무】

① 본 서비스는 공동주택 혹은 집합건물 ERP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비영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②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甲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신고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회계장부 기록의 검토,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③ 丙은 乙이 세무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甲이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丙이 대표 수납하여 정산한다.

④ 甲은 본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서류를 乙과 丙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甲은 甲의 프로그램 내 회계장부 정보에 접근하여 신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권한을 乙과 丙에 부여한다.

제1조의 2【서비스의 불가분성】

① 乙과 丙이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를 내용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서비스는 1년 단위로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1년간의 전반적인 전표 검증을 내용으로 하므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서비스의 대가도 1년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조【수수료】

① 본 계약에 따른 세무신고수수료 및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수수료는 월정액 50,000원(VAT별도)으로 한다. 연사용료를 일시 납부할 경우에는 년 550,000 원(VAT별도)의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② 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또는 CMS자동출금을 통해 매월 25일에 자동출금 납부한다. 일시납은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하며, 월납인 경우에는 가상계좌번호 혹은 CMS 자동출금을 통해 납부한다.

▶ 수수료 납부 방식 선택

납부방법	□ 일시납 □ 월납

▶ 결제 방식 선택

결제방법	□ 가상계좌 □ 자동이체

※ 일시납인 경우 가상계좌만 가능 / 월납-자동이체 선택시 신규계약 또는 통장변경의 경우 자동이체출금동의서 작성필요

제3조【계약기간 및 자동승계】

①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 : 2026년 6월 1일~2027년 5월 31일)

②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으로부터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계약 만료일자는 필요 당사자가 인지해야 하며 어느 일방도 사전 통보의무는 없다.

④ 계약기간 중 甲의 대표자, 관리주체 등의 변경이 있더라도 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계약기간 중 甲의 영업, 사업, 중요한 영업용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甲은 이 계약을 영업 등의 이전을 받은 자에게 승계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제4조【정보제공(수임동의 포함) 및 기밀보장】

① 甲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되는 세무정보를 乙과 丙이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며, 세무대리를 위하여 홈택스에 세무대리인 지정 및 수임동의 처리에 동의한다. 乙과 丙은 제공받은 세무정보 및 본 계약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甲의 기밀을 세무업무처리를 위한 목적 외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甲은 乙과 丙이 제공한 서비스(전산시스템 포함)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내용을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제5조【중도해지 및 해약책임】

① 乙과 丙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甲의 사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합의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의 연간 불가분·일체의 성질을 고려하여 기지급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미지급 수수료 전액을 즉시 지급할 의무를 계속 부담한다.

② 乙과 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위반한 경우 甲은 그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乙과 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乙과 丙은 서비스 기간인 1년간 제공할 서비스 총액에서 실제 연간 서비스가 제공된 비율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甲에게 원래의 계약기간 동안의 미지급 수수료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서 이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도 원래의 계약기간 동안의 세무신고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甲은 乙과 丙에게 세무신고자료, 검증자료에의 접근을 허용한다. 甲이 위와 같은 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거나 乙과 丙이 위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면하고 甲은 乙과 丙을 자신의 책임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제6조【업무수행 불능책임】

① 甲이 제공한 자료의 미비,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시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乙과 丙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甲의 서비스 신청시점이 세무신고를 대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乙과 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③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甲, 乙, 丙 어느 일방에도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본 계약서를 3부 출력하여, 날인 후 1부는 甲이 보관하고, 2부는 丙에게 전달한다.
※ 계약서를 메일로 전달할 경우 작성된 원본 계약서를 스캔하여 丙에게 1부 전송한다.